



Fn insurance

The Financial Insurance Magazine

Octobe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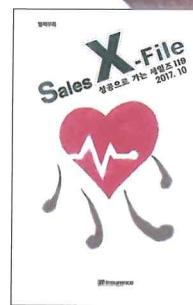
Vol. 283



생보發 'Health Reward' 보험역할론… '자기주도 건강관리' 확산 견인차
노인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뛴다… '치매 테크' 주목
하반기, 종신·정기보험… 보험료 '고공상승' + 환급률 '추락'
큰 병 발병시 가장 큰 문제는 생계… 생활비 주는 보험 "인기"
집단구타 등 학교폭력 피해 '도마위'… 보험, 안전판 될까?
질병보장 쑥 빠진 고령자 '실손'… '계륵보험' 전락하나?
"재테크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보험사들 VIP 마케팅 박차
치아보험시장, 업그레이드戰 개막 "무제한 반복보장"

SPECIAL INTERVIEW

성주우체국 김시욱 FC



당신은 '타인'입니까? '운전보조자'입니까? 행위자 특성, 자배법상 보호여부 결정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배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리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즉, 자신의 업무와 관계 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 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요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

【사실관계】

- (주)월우정보통신은 하도급 받은 통신기지국 시설공사의 수행을 위해 전기배선공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함)과 근

“이 사건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어떤 점에 주목을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심판결은 사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트럭의 아우트리거를 직접 조작하고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반면 대법원 판결은 하역 작업이 망인의 업무가 아닌 점과 망인이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하역 업무를 돋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 주목했다.”

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같은 날 카고 크레인 4.5t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소외 2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2는 원우정보통신의 지시를 받고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전선드럼 1개를 싣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작업 장소로 가도록 했다. 소외 3은 다른 근로자들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경사진 도로인 작업 장소에 도착,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을 내리막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정차했다.

– 그런데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봄대를 펴 전선드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 사고로 위 작업 장소에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어 넘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에 눌려 사망하게 됐다.

– 원우정보통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망인은 배전기능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화물의 운반 및 하역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아닌 전기배선공이었다. 그러나 망인이 아우트리거를 조작하고 봄대 작동을 위해 크레인 레버를 조작했고, 당시 소외 3은 크레인에 전선드럼을 걸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 있었다.

–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보험사(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나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3조가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국 이 사안은 망인이 자배법 제3조가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제1심 판결] 원고 청구 인용

이 사건 사고가 소외 3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하역 작업의 일부분을 망인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고 발생은 결국 소외 3의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 차량과 망인, 원우정보통신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제2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망인이 아우트리거를 조작, 사고 차량을 고정한 후 크레인 레버를 조작해 봄대를 펴는 순간 사고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바, 제반 사정들에 비춰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을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로서 자배법 제3조가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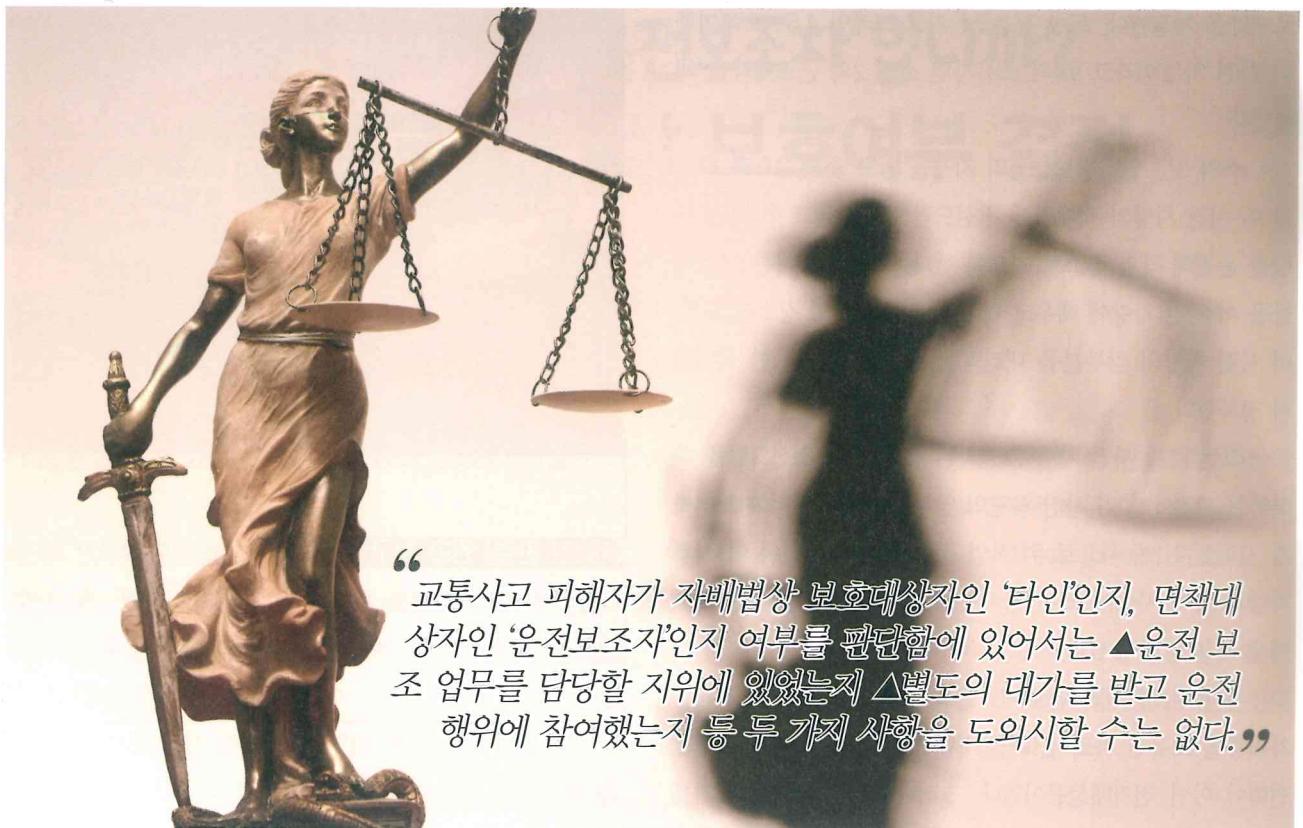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원고 청구 인용

1.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했다.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이때 위 타인이 해당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배법상 보호대상자인 ‘타인’인지, 면책대상자인 ‘운전보조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운전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지위에 있었는지 △별도의 대가를 받고 운전 행위에 참여했는지 등 두 가지 사항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그런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반 및 하역 작업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면서 소외 2와 그를 보조하는 소외 3이 담당하던 업무이다. 이 사건 당시는 소외 2가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전선드럼 하역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우트리거와 크레인 등 특수장치를 포함, 이 사건 차량 전체를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소외 3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그 작업장의 지형 특성에 맞게 아우트리거를 설치해 이 사건 차량을 지면에 견고하게 고

정한 후 바퀴고임목을 사용해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아우트리거와 크레인 작동에 능숙하지 않은 망인이 이를 조작하는 것을 묵인한 채 이 사건 차량 적재 함 위에서 하역 작업에 관여했다. 이러한 상황 속, 망인의 작동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이 여전히 운전자의 지위에 있고 망인은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전기배선공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소외 3의 전선드럼 하역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례평석]

1. 자배법상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

기 위해서는 ‘타인성’이 인정돼야 한다. 왜냐하면 자배법 제3조에서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타인은 법문으로 보아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가 될 것이다. 결국 차량의 운행자나 운전자, 운전보조자는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운전보조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이다. 위 사례는 1심과 2심, 대법원이 순차적으로 다른 결론을 내린 사안으로서,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이 사건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어떤 점에 주목을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심판결은 사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트럭의 아우트리거를 직접 조작하고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반면, 대법원 판결은 하역 작업이 망인의 업무가 아닌 점과 망인이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하역 업무를 돋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 주목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 자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이를 운전보조자라 함)’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해 그 지배 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가 이에 해당한다(서울 중앙지법,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2005), 82면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은 망인이 단지 사고차량의 운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을 운전보조자로 보고 면책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업무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행위의 외형만 본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지위에 있어야 한다.

승객이나 통행인 등이 업무 종사와 관계없이 운전자 등의 권리에 의하여서나 자발적으로 단순히 선의로 운전자의 운전 행위를 돋는 경우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에 해당한다(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2015), 46면 참조).

심지어 대법원은 운전자나 공동운행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타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 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 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가 운전자의 타인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운행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타인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 하지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해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참조).

4.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배법상 보호대상자인 ‘타인’인지, 면책대상자인 ‘운전보조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운전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지위에 있었는지 ▲별도의 대가를 받고 운전행위에 참여했는지 등 두 가지 사항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이에 대법원이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fn8}

글_ 박기역 변호사



박기역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면)으로 근무